2021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1년 6월 22일(화)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 <의안 제21호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 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구분하여 점검하되, 금융불균형 등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금융취약성지수의 편제 등을 통해 강화하였으며, 가계와기업의 취약차주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전반적인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아울러 보고서 끝부분에는 종합평가 섹션(section)을 추가하여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평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 정책당국의 대응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6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가계·기업의 취약부문, 금융불균형 심화 등 금 융안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균형있게 수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먼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늘어난 가계부 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 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 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채 규 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 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다른 일부 위원은 빈티지(vintage) 연체율 분석 대상을 단기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장·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bitcoin)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altcoin)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외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 성을 고려하여 유동외채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주요 현안 분석 중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하여 자산시장 여건 및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의 과거 위기전 상승 원인과 위기 직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의 취약부문 점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DSR은 대출 만기, 금리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DSR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증가 배경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이자 보상배율 취약기업이 장기존속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안) (생략)

## <의안 제22호 - 「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7호 및 제69조에 의거 공개시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한 유동성 조절 채널을 추가 확 보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3년물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 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6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고채와 통안증권에 대한 시장 선호도의 차이, 국고채 2년물 발행 상황 및 전망, 그리고 향후 통안증권 3년물 발행시 시장 선호 전망 등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고채의 시장성이 통안증권에 비해 양호하여 국고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국고채 2년물은 올해 2월 신규 발행된 이후 차츰 발행이 정착되면서 그 유통금리가 통안증권 2년물을 하회하고 있는데, 향후 통안증권 3년물 발행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통안증권 3년물 발행에 앞서 시장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발행기간을 국고채 3년물과 동일한 6개월로 설정하는 등 시장 선호를 높일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안증권 발행만기의 확대에 따라 유동성 조절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RP 매각 등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을 늘릴 여지

는 없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고채 3년물과 2년물, 그리고 통안증권 2년물의 금리스프레드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발행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변하면서, 발행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고채 3년물 금리와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우리나라 콜시장및 RP거래의 규모, 콜시장에서 당행과 금융기관 간 지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등을 고려할 때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을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의 여건 및 시장참가자의 적응 상황 등에 맞추어 향후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2~3년 만기 구간의 국고채 발행규모 및 시장수요가 어떠한지, 그리고 당행의 통안증권 3년물 발행이 시장금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지 물었음. 아울러 통안증권 3년물 발행이 시장에 노이즈(noise)로 작용하여 지표금리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큰 국고채 3년물 금리의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중 2~3년 만기의 국고채 발행예정 규모는 2년 물 15조원 등 총 50조원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물 시장의 거래규모 및 통안증권 3년물 발행예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만기 3년물 시장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소화 여력이 크게 제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현재 통안증권 3년물의 발행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통안증권 3년물 발행이 시장금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3년물이 발행될 경우 시장금리가 이를 프라이싱(pricing)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확대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통안증권 발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 도 불구하고 3년물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물었음. 또한 당행이 국고채 를 매입하면서 한편으로 장기물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일종의 상충관계가 아닌지 덧붙여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안증권 3년물 발행은 기존 2년물에 대한 편중도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조절수단의 추가 확충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타 유동성 조절수단의 차환 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 만기 구간의 시장수요가 비교적 견조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단순매입 대상 국고채의 잔존만기, 그리고 당행이 보유한 국고채와 외화자산의 듀레이션(duration)을 고려할 때 현재 발행중인 통안증권의 평균만기와

는 다소 차이가 있어, 국고채 매입과 통안증권 3년물 발행이 자산-부채의 만기 측면에서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향후 통안증권 3년물을 발행하게 될 경우 시장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며, 시장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유동성조절수단의 추가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공개시장운영 차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생략)